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판 지연 보상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71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3.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명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를 별도의 장(제7장)으로 신설하여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 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할 수 있고(안 제41조),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재판지연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안 제42조), 해당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당한 보상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43조)을 신설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u> <신설> <신설>	제2조(특례의 범위) ----- -----<u>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형사소송 및 재판지연 보상</u>----- -. 제7장 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특례 제41조(신속한 재판의 신청)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신 설>

<신 설>

경우

2.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제21조2)에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2조(재판지연의 보상 청구) ① 제41조에 따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신청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지연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43조(보상의 결정) ① 제42조에 따라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소송의 내용, 재판지연의 사유 등에 비추어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당한 보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절차,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지연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계속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재판 지연 관련 통계

『사법연감』에서 제공하는 사건 처리기간³⁾⁴⁾ 통계를 활용하여 사건 유형별(민사, 형사 등), 심급별(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별(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재판 지연의 전반적인 경향을 이하에서 살펴봄.

(1) 민사사건 처리기간 분석

『2024 사법연감』에 따라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심급별로 분석해보면, 2023년 상고심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7.9개월로 전년(11.7개월) 대비 4개월 가량 단축되었고, 2023년 항소심 사건도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다소 단축되었으나 2021년부터 항소심 사건은 평

1)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2)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처리기간은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종결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함. 판결선고기간과는 다르며, 『사법연감』에 판결선고기간에 대한 별도의 통계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4) 재판 지연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처리기간 외에도 접수 및 처리건수, 장기미제사건수와 전체 미제사건 중 장기미제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등의 지표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처리기간에 한정하여 분석함.

균처리기간이 10개월을 초과하고 있음. 특히 1심 합의부⁵⁾ 사건은 평균처리기간 즉 접수 이후 결론까지 15.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2022년 평균처리기간인 14개월 대비 1.8개월 가량 증가한 수치임.

<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 >

(단위: 건, 월)

구분	1심				항소심				상고심	
	합의부		단독		고법		지법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2019	47,414	9.9	880,709	5.1	16,073	7.9	43,016	8.3	15,267	6.1
2020	47,970	10.3	865,001	5.3	16,750	7.9	42,183	9.3	13,712	6.2
2021	43,144	12.1	813,902	5.5	15,746	10.1	43,760	10.1	19,161	8.0
2022	37,595	14.0	730,304	5.5	14,015	11.1	44,862	10.8	23,924	11.7
2023	31,723	15.8	737,163	5.4	13,240	10.8	45,142	11.0	14,588	7.9

주1) 사건수는 처리건수를 의미함

주2) 기간은 1건당 평균처리기간을 의미함

* 출처; 『2024 사법연감』 제6장 통계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p.822.

(2) 형사사건 처리기간 분석

『2024 사법연감』에 따라 형사공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심급별로 분석해보면, 상고심의 경우 합의부 사건 및 단독사건 모두 전년 대비 처리

5)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기간이 단축되어 2023년 평균처리기간이 각각 3.0개월, 2.4개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됨. 반면에 1심 합의부⁶⁾ 사건 및 항소심 사건은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항소심 사건(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9년 5.2개월에서 2023년 7.5개월로 가장 큰 폭으로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였음.

<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 >

(단위: 건, 월)

구분	1심				항소심				상고심			
	합의		단독		고법		지법		합의		단독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사건수	기간
2019	18,071	5.3	217,816	4.7	9,438	4.9	60,415	5.2	4,065	3.3	18,464	2.7
2020	16,869	5.9	228,119	5.2	8,491	5.3	60,298	6.0	3,835	3.6	17,192	2.8
2021	17,963	6.6	215,527	5.8	8,806	5.4	59,649	6.3	3,991	4.0	16,689	2.8
2022	19,800	6.8	203,704	5.9	9,201	5.2	60,835	7.2	3,531	3.2	15,901	2.5
2023	22,443	6.9	208,484	5.8	11,508	5.3	62,981	7.5	4,070	3.0	16,349	2.4

주1) 사건수는 처리건수를 의미함

주2) 기간은 1건당 평균처리기간을 의미함

* 출처; 『2024 사법연감』 제6장 통계 제2절 사건의 추이(누년비교), p.867.

6)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다. 「병역법」 위반사건
 -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나. 검토의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 사법연감』에 따른 2023년 법원의 민사본안사건 및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⁷⁾ 통계를 살펴보면, 하급심의 경우 재판지연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민사본안사건의 경우에는 1심 합의부 사건 및 항소심 사건의 처리기간이 증가하였으며 형사공판사건의 경우에도 1심 합의부 사건 및 항소심 사건의 처리기간이 증가하였음.

재판의 지연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며, 심지어 재판이 너무 늦어져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⁸⁾도 있는 만큼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너무나도 크다고 할 것인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판결선고기간 내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신청하고, 3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상급법원에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⁹⁾를

7) 처리기간은 접수된 시점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으로 소취하, 조정에 의한 종결 등이 포함되어 판결선고기간보다 짧게 나타날 수도 있음.

8) 법률저널 [사설] 정의의 시계가 멈춘 사법부 재판 지연의 심각한 현실, 2023.12.07

9)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원의 재판 지연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기간¹⁰⁾,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기간¹¹⁾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판결을 선고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 개별사건의 특수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¹²⁾ 일률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소 제기 5개월 내의 중국판결 선고기간을 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184조(現 제199조)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¹³⁾한 바 있고, 대법원

· 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10) 제199조(중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11)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2) 법원행정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 2. 기준으로 확인한 장기미제 사유 통계표 분석 결과, 장기미제 발생의 개별원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관련사건 결과대기(23.0%)와 증거조사의 지연(감정결과 미도착 등)(20.7%)인 것으로 확인됨.

13)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

또한 「민사소송법」 제199조 등 판결선고 기간과 관계되는 조문은 혼시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¹⁴⁾

형사소송의 판결선고기간을 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으나, 위 결정 및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6. 1. 26. 선고 2005헌마108 전원 재판부 결정¹⁵⁾ 등을 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역시 혼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¹⁶⁾.

둘째, 재판 지연에 대하여 법원에 보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법원이 보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하여 실제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오히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정하고 적정한

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들 수 있다. 이 법규정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판결의 선고를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월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처분취소 사건들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러나 이 법규정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직무상의 혼시규정으로 해석함이 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이고, 법원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위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판결의 선고가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1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민사소송법 제199조 등은 모두 혼시규정임

15) “모든 재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적정한 재판기간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기란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법률이 선고기간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기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요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의 졸속을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판결선고기간을 혼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0 참조) 판결선고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사법절차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판결 또는 결정의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재판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16)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민·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24. 5., p.8.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에는 법치주의의 이념상 본질적 요소인 동시에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재판의 공정 및 적법절차의 요청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 내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헌법 제27조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결정¹⁷⁾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에는 법치주의의 이념상 본질적 요소인 동시에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재판의 공정 및 적법절차의 요청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 내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신속한 재판’이라 함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94 참조).

이러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송절차에서 단계별로 소송을 촉진하는 수단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효율적인 소송절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바,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청구권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1 참조).

-중략-

헌법 제27조 제3항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이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뜻한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심판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함 다음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헌법재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오히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재 2001. 6. 28. 99헌가14, 판례집 13-1, 1188, 1200 참조)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지연 보상제도를 도입할 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과 적정한 재판은 함께 추구되고 실현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신속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재판지연의 원인은 다양하고, 재판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재판지연의 근본적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소송의 증가로 재판지연이 더욱

17)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대한 결정임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신속하고도 충실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우며,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